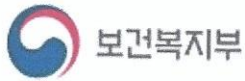


2026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2025.11.04.)

※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인력배치 기준 개정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2025년 1월1일 기준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단위 : 원)

등급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2026년 수가	2026년 본인부담금
1등급	84,240	16,850	86,030	17,200	88,520	17,700
2등급	78,150	15,630	79,810	15,960	82,120	16,420
3,4,5등급	73,800	14,760	75,360	15,070	77,540	15,500

2) 2025년 1월1일 기준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단위 : 원)

등급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2026년 수가	2026년 본인부담금
1등급			90,450	18,090	93,070	18,614
2등급			83,910	16,780	86,340	17,268
3,4,5등급			79,240	15,840	81,540	16,308

3)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

(단위 : 원)

급여비용 안내 - 비급여 계산입력(30.5로 계산함)										
분류	인력배치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포함)			
		총급여액	본인부담금				식사재료비 (간식비포함)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1등급	2.3:1	2,699,860	539,972	323,983	215,989					
	2.1:1	2,838,635	567,727	340,636	227,091					
2등급	2.3:1	2,504,660	500,932	300,559	200,373					
	2.1:1	2,633,370	526,674	316,004	210,670					
3,4,5 등급	2.3:1	2,364,970	472,994	283,796	189,198					
	2.1:1	2,486,970	497,394	298,436	198,958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6년 1월 1일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를 기준으로 평균상향(1.48%)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며, 2026년 01월 분부터 본인부담금 급여수가 변동되어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일

요양원장 (관인생략)

입 소 비 용

■ 2026년 (30일기준)

구 분	요양급여 급여비용(본인부담20%)			비급여 식자재비 (30일기준)	본인부담금 총액 (30일 기준)
	1일수가	총급여비용	본인부담		
1등급	74,590	2,237,700	447,540	300,000	747,540
2등급	69,210	2,076,300	415,260		715,260
3-5등급	63,800	1,914,000	382,800		682,800
※ 본인부담률 일반대상 = 20% 40%감경 = 12% 60%감경 = 8% ※ 기초수급자 면제			1등급 12%		568,520
			1등급 8%		479,020
			2등급 12%		549,160
			2등급 8%		466,100
			3-5등급 12%		529,680
			3-5등급 8%		453,120

■ 비급여 항목 비용

항 목	내 용	금 액	비 고
식재료비	3,000×3식	9,000원	1일 10,000원
간식비	2회	1,000원	
진료, 약제비	외래 진료 및 약제비 비급여액	본인부담	
기타비급여	보호자 요청 물품류	본인부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름.